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배포

2019.5.16.(목)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주 흥 민(02-2100-2970)	담 당 자	유 원 규 사무관 (02-2100-29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남 석(02-2110-1930)		이 현 우 사무관 (02-2110-1932)
	외교부 여권과장 윤 희 찬(02-2002-0100)		유 아 람 행정관 (02-2002-0133)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진 재 선(02-2110-3269)		김 치 훈 검사 (02-2110-3544)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 전 혜 선 (02-2110-1560)		정 세 민 사무관 (02-2110-1566)
	경찰청 수사과장 손 제 한 (02-3150-2168)		김 태 현 경정 (02-3150-1778)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장 김 철 웅(02-3145-8150)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총괄팀장 최 병 권(02-3145-8130)

제 목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

□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 금융위, 과기정통부, 법무부, 외교부, 방통위, 경찰청, 금감원 등

** 신·변종 금융사기 등 보이스피싱 수단별 대응, 대포통장 관련 사전예방·사후제재 강화,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엄정 대응, **보이스피싱 대국민 홍보 강화**

□ 한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5.16(목) 부터 방송 실시

○ 5.16일부터 1개월간 TV·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을 방영함으로써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피해를 방지

* TV : 지상파, 케이블, 종편 등 270여개 / 라디오 : KBS, MBC, 종교방송, DMB 등 90여개

○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 협조하여 창구 TV,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SNS 등에 지속적으로 방영*

* 경찰청도 금융권, 지자체, 소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지속 방영 추진

※ [참고] 대표적인 피해 사례

[별첨]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방통위 주관 보도 자료)

참고

대표적인 피해 사례

1.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피해 발생

- ① '18.9월 A씨(52세, 자영업)는 성명불상자로부터 "OO저축은행 박OO 대리입니다. 고객님의 低利로 대환대출 가능하십니다. **대출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여 모바일로 신청"하라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눌러 OO저축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
- ② 잠시후 박OO 대리라며 전화한 대출상담원이 "**기존 대출상환을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0천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자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워진 A씨는 확인을 위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저축은행으로 전화하였으나 **방금 통화한 박OO이 다시 전화를 받자 안심하고 기존 대출상환 자금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

2. 허위결제 문자[SMS], 원격조종 앱(App) 이용 보이스피싱 피해

□ 허위결제 문자(SMS)발송 후 불법 앱(App),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휴대폰·컴퓨터를 원격조종하여 자금 편취

- ① '19.3월, 사기범은 B씨에게 "**416불 해외 결제**"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 피해자가 발신번호로 전화하자 마치 카드회사인 것처럼 전화를 받고, 카드부정사용 신고를 접수하였으니 경찰로 이첩할 것임을 안내한 후, ◎◎경찰서로 속이고 전화하여 금감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재안내
- ② 금감원 직원 "**○○○**"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불상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휴대폰에 **팀뷰어 프로그램(앱명 : Quick Support)**을 설치하도록 유도
- ③ 앱 설치 이후 사기범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하여 카드사 현금서비스 2건, 카드론 2건 등 **4건의 대출을 실행받아 편취**하고 그 다음날 같은 수법으로 예금 '150백만원'을 '○○○'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는 등 **199백만원을 편취**

- ① '19년 3월 피해자 C(52세, 교사)는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는 신용카드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메시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였으며, 전화 상담원은 피해자 C에게 "명의를 도용된 것 같으니 고객(피해자)을 위해 대신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킴
- ② 잠시 후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 경감이라는 사기범이 전화가 와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의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발생한 명의 도용 사기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
- ③ 사기범은 피해자 소유의 은행 계좌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점검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컴퓨터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생성번호를 직접 입력**하게 하여 2천만원 상당의 예금을 편취

3. 물품대금 전달 보이스피싱 피해

- 물품 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줄 것을 요구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해당 계좌에 이체된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에 연루

- ① '18.10월 D씨(37세, 주부)는 불상자로부터 "당사는 **병행수입업체**인데, 누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개인판매인 것처럼 위장하여 **물품 판매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줄 사람을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고 문자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정○○ 부장이라는 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줌
- ② 며칠 후 D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원중 알바수당 10만원을 제외한 990만원을 정○○ 부장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기범 일당에게 전달
- ③ 다음날 D씨는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어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사기에 **연루되었음을 깨달았으나**, 경찰로부터 사기 가담 여부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재판중**

4.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재산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피해 발생

- ① '18.7월 E씨(34세, 직장인)는 서울OO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국제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내일 검찰로 출두하라"고 요구하였고 E씨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자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알려 줄테니 영장을 확인하라"며 피해자를 기망
- ② 사기범이 불러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에게 발부된 (가짜) 영장을 확인한 E씨는 사기범의 말을 신뢰하고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사기범이 알려준 금감원 F팀장의 계좌로 전 재산 0억원을 이체
- ③ 자금출처를 확인한 후 곧 환급될 것이라는 말과 달리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E씨는 금감원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리고 지급정지 하였으나 이미 전액 현금으로 인출

5. 지인사칭 메신저피싱 피해

-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하면서 비밀번호, 인증서 오류 등을 명목으로 타인 계좌로 급히 자금을 이체할 것을 유도하여 피해 발생

- ① 사기범이 카카오톡으로 지인(부모, 친인척, 친구, 직장동료 등)을 사칭하여 "급히 거래처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면서 타인 계좌로 90만원 이체 요청*

* 지연인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요청하거나 10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여러 번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 다수

- ② 사기범은 피해자 F에게 이체 내역을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하는 한편, 피해자가 전화하겠다고 하자 휴대폰이 고장나서 전화 수신폭발신은 안되고 카카오톡만 된다고 속여 전화 확인을 회피

6. 대행알바 가장 보이스피싱 피해

- 구매대행 알바라고 속이고 계좌 정보를 알아내는 한편, 상품권 구매를 대행해주도록 유도하여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이용

- ① '18.12월 G씨(25세, 직장인)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대행알바"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쓰는 성명불상자가 "계좌로 100만원씩 입금되면 뽐O 사이트에서 상품권 10장씩 구매하여 카카오톡으로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 주면 알바비 3만원을 주겠다"는 카카오톡 문자를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세 차례에 걸쳐 상품권 구매를 대행해 주고 알바비 9만원을 수취
- ② G씨는 다음날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 문자를 받은 후에야 자신이 보이스 피싱 자금세탁에 이용된 사실을 깨달았으나 피해자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해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 받음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